

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박 찬 원 의원

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찬원 의원)

의안 번호	33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1년 04월 08일

발 의 자: 박찬원 의원

찬 성 자: 전수일, 이주용, 심현정의원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평창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과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경우회 지원사업 범위(안 제3조)

나. 경우회 지원신청(안 제4조)

다. 보조금관련 준용사항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1. 03. 08. ~ 2021. 03. 28.(20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1. 02. 25. ~ 2021. 03. 05., 제출된 의견 없음

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경우회”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된 평창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사업
4.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지원신청 및 결정)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, 타당성,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5조(준용) 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, 지도·감독,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

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련법령]

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

□ 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(大韓民國在鄉警友會)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제2조(법인격 등)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
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□ 제3조(정관)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명칭
2. 사무소의 소재지
3. 사업에 관한 사항
4. 회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5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6.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
7. 자산·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□ 제3조의2(사업)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경우회 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

업
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
4.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
5.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
6.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□ 제4조(회원의 자격)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,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.

□ 제5조(조직)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, 시·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.

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, 시·도회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청(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재지에,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.

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.

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.

□ 제6조(총회) ① 총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.

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
□ 제7조(총회의 소집)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□ 제8조(회의 및 의사)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□ 제9조(총회 의결에서의 특례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1. 5. 30., 2020. 3. 31.>

1. 정관의 변경
2. 삭제 <2020. 3. 31.>
3. 예산·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
4.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
5.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

□ 제10조(총회의 의사록) ① 총회의 의사(議事)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□ 제11조(이사회) 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.

③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

수 있다.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제12조(중앙회의 임원) 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<개정 2011. 5. 30.>

1. 회장 1명
2. 부회장 약간 명
3. 사무총장 1명
4.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
5. 감사 2명

②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(選任)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 3. 31.>

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(監査)한다.

□ 제13조(시·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) 경우회의 중앙회, 시·도회(특별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. <개정 2011. 5. 30.>

□ 제14조(사무부서) ① 경우회의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 5. 30.>

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□ 제15조(재정)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제16조(감독)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3조(지원사업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범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학교폭력 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
4.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박찬원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2